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2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건강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담게임장 ▲ 1그룹 전체 집합금지 적용
2그룹(5종)	▲ 식당·카페 ▲ 노래(코인)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유원시설 ▲ 오락실·멀티방 ▲ 상업·마트·백화점(300㎡ 이상) ▲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 ▲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실외체육시설(실외 거울스포츠시설 포함) ▲ 숙박시설 ▲ 피터룸 ▲ 도서관 ▲ 키즈카페 ▲ 돌잔치전문점 ▲ 전시·화·박람회 ▲ 미사지·업소인마소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종교시설
기타시설(13종)	▲ 콜센터 ▲ 물류센터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4 방역 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26.(월) 0시부터 8.8.(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장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부터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0종(1그룹 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과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 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 영화관, ▲ 공연장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단 대학·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 하에 공연 가능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자)

- (결혼식)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 (장례식) 빈소별 50명 미만+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 (결혼식)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장례식) 빈소별 50명 미만+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중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 실내체육시설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운동 중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부분은 사전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 (실외체육시설) 사업실 운영 금지 및 안내 * 4단계: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이용자) - '운동 중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부분은 사전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 (실외체육시설) 사업실 이용 금지
▲ 전시회·박람회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시설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학술행사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및 안내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의 경우, 기본광역추진(4단계)에 따라 국제회의의 개최 가능	○ (이용자)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준수
★ 준수 의무사항	
▲ 콜센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물류센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출생,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전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가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설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제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험요인>

- ▲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 ▲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 ▲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 ▲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⑧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㉑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① 비말발생(침 뱀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③ 시설 내 공용 장소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④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 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 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책자·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후 소독 관리 철저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사업장 방역수칙

1 사업장(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매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 구축
- ②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 ③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④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 ⑤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사업주는 적극 지원)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출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 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예 아니오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③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④ 직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⑤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⑦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 개선 및 참고 사항 	

<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2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튀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튀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유증상자 관리를 통한 감염전파 차단)	※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1 사업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1-1 모든 사업장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흡연실 등), 공용물품 이용을 통한 접촉, 확산 가능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 ▲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 ▲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 발생(큰소리 대화, 일부 제조업 작업환경의 경우)

(1)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 통 수 칙	①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4주보관)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⑤ 음식섭취 자제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 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근로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⑧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 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⑨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⑩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①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추가 수칙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2) 구내식당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 통 수 칙	① 방역수칙 준수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개인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 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 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안내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⑤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 (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⑥ 밀집도 완화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㉞ 환기하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 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㉟ 소독하기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